

# 서울특별시 가리봉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

|          |      |
|----------|------|
| 의안<br>번호 | 1484 |
|----------|------|

제출년월일 : 2016년 10월 31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 계획’상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인 가리봉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도시재 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임.

- ‘가리봉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계획안을 수립하였음.

나. 본 ‘가리봉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대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함.

## 다. 추진경위

- '14.12.04. : 가리봉재정비촉진지구 해제 고시 (서울특별시 제2014년-418호)
- '15.01.20. : 주민 설명회 개최
- '15.02.02. : 가리봉 도시재생지원센터 개소
- '15.04.29.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지원 신청
- '15.07.21. : 주민 간담회 개최
- '15.12.31. : 도시재생사업 공모 사업지 선정
- '16.02.29. : 국토부 제1차 관문심사 통과
- '16.03.04. : 가리봉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착수
- '16.06.30. : 국토부 제2차 관문심사 통과
- '16.07.13. : 관문심사 결과 통보
- '16.11.03. : 가리봉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공청회 개최

## 추진방향

### ○ 사업목적

가리봉 일대의 G밸리 개발에 따른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 등 지역주민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공동체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으로 전략계획에서 제시한 활성화지역의 정책목표를 달성하여 근린주거지역의 활력을 회복하고 재생효과를 파급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비전 및 목표

더할 마을 봉우리  
**G-Valley를 품고 더하는 마을 加里峰**



**재생전략 1. 사람을 더하는 공동체활성화** ■ 마중물 1개사업

- 주민역량강화, 재생사업홍보 등을 통한 공동체 및 지역활성화 추진

**재생전략 2. 공간을 더하는 생활환경개선** ■ 마중물 5개사업

- 불량도로 정비, 노후리수관로 개량 등 기반시설 개선
- CCTV, 소화시설, 쓰레기처리시설등 주민 방법 및 안전시설 확충
- 부족한 주차공간 해소 및 소규모 일자리 창출

**재생전략 3. 시간을 더하는 문화경제재생** ■ 마중물 3개사업

- 우마길 문화의 거리를 통한 골목경제 활성화 추진
- 별집 앵커시설을 활용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 이야기가 있는 마을 조성을 위한 가리봉 루트 개발

**"총 마중물 9개 사업, 협력사업 10개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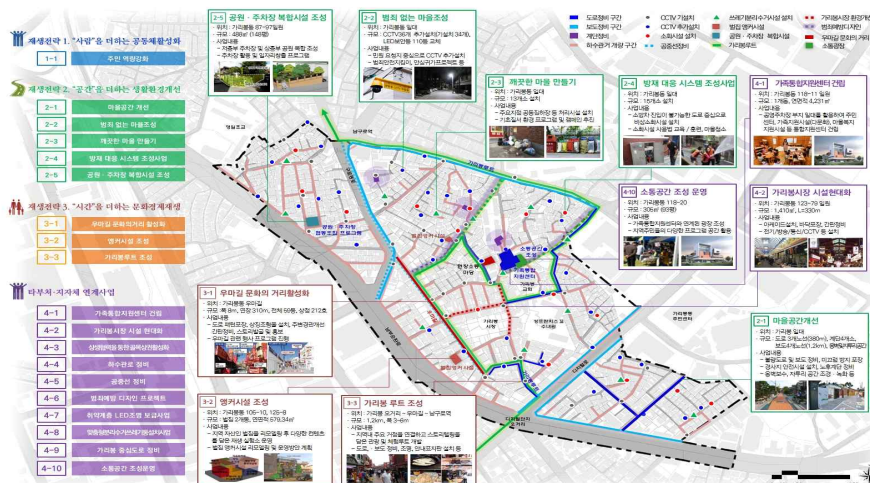
□ 사업개요

- 위 치 : 구로구 가리봉동 일원(면적 332,929m<sup>2</sup>)
- 인 구 : 19,287 명(7,501 세대)
  - 외국인 인구 7,819명(전체 40.5%), 중국동포(전체 40%)
- 사업기간 : 2014.9. ~ 2020.12.
- 사 업 비 : 100억원(국비 50억원 포함)
  - '16년 예산 2,953백만원(시비 2,835백만원, 국비 118백만원)

○ 주요사업 내용

- 공동체 활성화
  - 재생학교 운영, 주민공모사업, 주민·공동체 역량강화, 재생홍보 사업 등
- 생활환경 개선
  - 불량도로 등 마을공간 개선, 범죄 없는 마을 조성, 깨끗한 마을만들기. 방재 대응 시스템 조성, 공원·주차장 복합시설 조성
- 문화경제 활성화
  - 앵커시설 조성, 우마길 문화의 거리 활성화, 가리봉루트 조성

○ 가리봉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 도시재생사업 추진전략

- 마중물사업을 통해 지역고유 특성 및 자원을 통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젊은인구 유입, 노후건축물 개선, 앵커시설 조성, 문화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 하고자함

더할가 마을리 봉우리봉

### G-Valley를 품고 더하는 마을 加里峰

|                                       |  |   |  |   |   |   |
|---------------------------------------|--|---|--|---|---|---|
| <b>목표</b>                             |  |   |  |   |   |   |
| <b>加里峰<br/>고유<br/>특성<br/>·<br/>자원</b> | <br>기리봉 거주민<br><br>구로공단 G-Valley<br>젊은 창조계층 16만명<br><br>쓰레기 무단투기<br><br>불량도로<br><br>주민지원센터 無<br><br>공단의 역사 추억<br><br>주차부족 좁은 길<br><br>방범안전 소방·방재 시설부족                                      | <br>주민지원센터 無<br><br>공단의 역사 추억<br><br>주차부족 좁은 길<br><br>방범안전 소방·방재 시설부족   | <br>주민지원센터 無<br><br>공단의 역사 추억<br><br>주차부족 좁은 길<br><br>방범안전 소방·방재 시설부족  | <br>주민지원센터 無<br><br>공단의 역사 추억<br><br>주차부족 좁은 길<br><br>방범안전 소방·방재 시설부족 | <br>주민지원센터 無<br><br>공단의 역사 추억<br><br>주차부족 좁은 길<br><br>방범안전 소방·방재 시설부족 | <br>주민지원센터 無<br><br>공단의 역사 추억<br><br>주차부족 좁은 길<br><br>방범안전 소방·방재 시설부족 |
| <b>경쟁력<br/>있는<br/>핵심<br/>콘텐츠</b>      | <b>사람을 더하는 공동체 활성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의 거주활력 제고를 위한 젊은 인구 거주 유도과 다양한 주거도입</li> <li>· 주민 자력재생을 위한 주민·공동체 역량강화</li> <li>· 중국동포와 문화갈등해소를 위한 공동체 소통 활성화</li> </ul> | <b>공간을 더하는 생활환경 개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불편 해소와 편리한 마을 조성을 위한 노후기반시설의 정비</li> <li>· 범죄없는 안전한 마을 조성을 위한 방범·방재 시설의 확충</li> <li>·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거리 환경 조성</li> </ul> | <b>시간을 더하는 문화·경제 재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체적 공공행정 자원을 위한 통합행정 지원 센터 조성</li> <li>· 기존 상권, 문화컨텐츠 확보를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li> <li>· 가리봉 역사와 추억 보전을 위한 지역 자산 확보</li> </ul> |   |   |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제20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③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획의 목표
2.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3.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
4. 공공 및 민간 자원 조달계획
5. 예산 집행 계획
6.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점검 계획
7. 제23조에 따른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역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제1항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전에, 제2항의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주거재생과 주거재생사업팀 최명국 (☎ 2133-7177)